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12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6. 28.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,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벌칙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 1.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. 3. (생 략) ③ (생 략)	제4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2조(과태료) <신 설>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 역위원회가 부과 · 징수한다.	<삭 제> 2.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42조(과태료) ① 제7조제2항에 <u>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</u> <u>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</u> <u>를 부과한다.</u>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.